

보도	2026.9.1.(화) 14:00	배포	2026.9.1.(화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신용제	(02-3145-7020)
	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국	책임자	선임국장	임권순	(02-3145-8220)
		담당자	팀 장	심여희	(02-3145-8235)
	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부	책임자	본부장	정형규	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 장	김효실	(02-2003-9420)

〈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 〉

**금융소비자 올리는 허위·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
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절차를 전면 개선합니다.**

- 「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」 설명회 개최 -

I 설명회 개요

- 최근 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 - 이에, 금융감독원·금융투자협회는 '26.4~8월 중 업계와 공동으로 T/F를 운영하여 「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」을 마련하였고,
- ※ 지난 '26.8.27.(목) 제4차 「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」에서 논의된 사항으로,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음
-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금번 설명회를 개최

「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」 설명회 개요

- ☑ 일시 및 장소 : '26.9.1.(화) 14:00~15:30 (1.5시간), 금융투자협회 3층
- ☑ 주요 참석자 및 주요 내용 :
 - 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·소비자피해예방국, 금융투자협회 등
 - (업계) 70여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·CCO·광고업무 담당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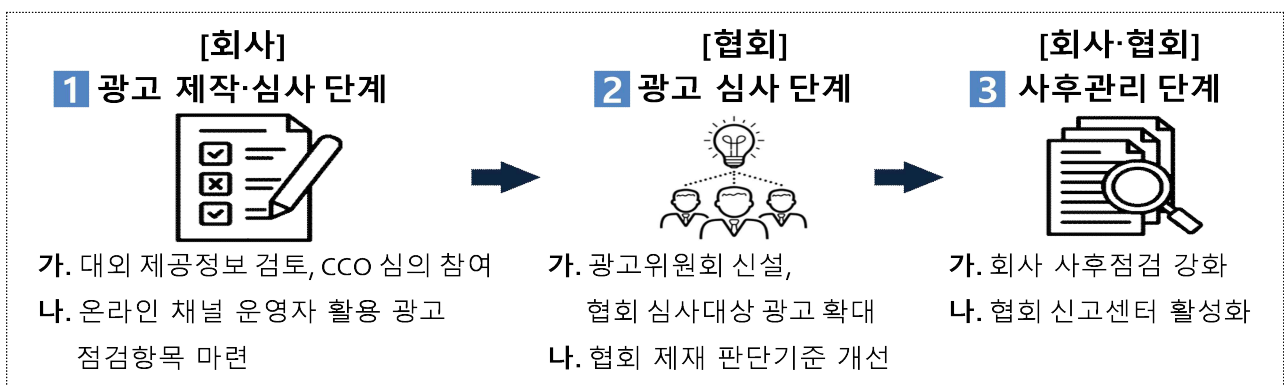
시 간	내 용
14:00~14:10	【개회사 및 모두발언】 서재완 부원장보
14:10~15:00	【발표 내용】 ▶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투자광고를 위한 제언 ▶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 방안 ▶ AI를 활용한 광고 심사 효율화 사례 소개
15:00~15:30	【질의 답변, 향후 추진일정 논의 등】

Ⅱ 모두발언 주요 내용

-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 허위·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는 현상을 우려하며,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
 -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,
 -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·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힘
 - 개선안은 무너진 원칙을 다시 세우고 훼손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함

Ⅲ 개선안 주요 내용

- 금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, 심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 전반에서,
 - ① 대외 제공 정보의 투자광고 여부 사전 검토, CCO의 광고 심의 참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·심사 절차를 강화하고,
 - ② 광고위원회 신설·심사 범위 확대·제재 판단기준 마련 등 광고 관련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
 - ③ 또한, 회사가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금투협회의 허위·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



가. 대외 제공 정보의 광고 여부 사전 검토 및 CCO의 심의 참여

- 시황·업황 분석 등 대외제공 정보에 개별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투자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혼재
 - 대외에 제공되는 정보내에 투자 광고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
 - 허위·과장광고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광고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(CCO)의 역할 부재
 - 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
- ⇒ **(기대효과)** 대외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종목 등의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고, 허위·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

나.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 점검항목 마련

-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가 증가함에도 관리가 미흡하여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* 발생 우려
 - *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
 -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→심의→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
- ⇒ **(기대효과)**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에 대한 회사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오해 소지를 방지

【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·심사 절차 개선】

현 황	개선안
√ 광고 해당여부 검토의무 규정 부재 √ 시황분석자료 등에 광고 내용 혼재 √ CCO의 투자광고 검토 역할 부재 √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 관리 미흡	⇒ √ 대외정보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 명시 √ 투자광고 판단기준 사례 공유 √ CCO의 광고 심의 과정 참여 √ 온라인 채널 운영자 광고 체크리스트 마련

가. 협회내 광고위원회 신설 및 심사 대상 광고 확대

- 협회내 광고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전담 위원회가 없어 소비자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 체계 부재
 - 협회 내에 업계·소비자단체·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‘광고위원회 (가칭)’를 신설하여 협회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
 -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회사의 자체 채널 (유튜브 등) 동영상 광고가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, 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의 편차가 발생
 - 자체 채널내 ①신규 상장 ETF, ②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, ③‘광고위원회’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
- ⇒ **(기대효과)**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율규제 절차에 참여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, 회사별 심사 기준 편차 해소

나. 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 신설 및 판단기준 개선

-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투자협회의 제재 판단기준(예: 행위의 결과)이 불분명하여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음
 -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
- ⇒ **(기대효과)** 위반 행위에 대한 협회 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제고

【금융투자협회 광고업무 절차 개선】

현 황	개선안
√ 협회내 광고 심사 정책 전담 기구 부재 √ 자사 채널 동영상 광고가 협회 심사 대상 광고에서 제외 √ 제재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	⇒ √ 광고위원회 신설 √ 신규 상장 ETF, 고위험 상품 동영상 광고 등을 심사 대상에 추가 √ 광고 위반 관련 제재 판단 기준 마련

3 광고 사후관리 강화

가. 금융투자회사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 등 실시

- 협회·자사 준법감시인의 정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, 온라인 라이브방송에 심사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는 사례 발생
 -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,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(연 1회 이상)
- ⇒ **(기대효과)** 정정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, 심사필 광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누락하는 문제 방지

나. 금융투자협회 허위·과장광고 신고센터 활성화

- 금융투자업계의 자율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금융투자협회 허위·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
 -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내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, 신고 접수·처리에 관한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

【광고 사후관리 절차 개선】

현 황	개선안
√ 정정 요구사항 일부 미반영 사례 √ 광고 게시 후 사후점검 절차 미흡 √ 협회내 신고센터 운영절차 불분명	⇒ √ 심사안과 일치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 √ 자체 사후점검 의무화 √ 신고센터 활성화·내부운영 절차 마련

IV 향후 계획

- 개선안은 '26.9월 초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 개정(안) 사전 예고, 의견 접수 이후 '26.10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하고,
 - 금융투자회사·금융투자협회의 내규 반영,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'27년 1월 중 시행 예정

※ 협회 업무규정 등 개정(안)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*에서 확인 가능

*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kofia.or.kr>), 법규정보시스템 → 규정 제·개정 예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주요 미흡 예시에 대한 개선안 및 기대 효과

구분	주요 미흡 예시	개선안 및 기대 효과
대외제공 정보에 광고성 내용 혼재		대외 제공 정보에 대한 투자광고 해당 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 마련 ⇒ 시황 분석자료 ^{주)} 등에 투자광고성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 근절 주) 투자유인 없이 과거 통계자료만 제공하는 경우 투자광고로 보지 않음
투자자 오인 소지 내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		CCO의 광고심의 과정 참여 의무화 및 협회 신고센터 활성화 ⇒ 투자자 오인 소지 광고의 사전 차단 및 광고 게시 후 신속히 시정
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 관리 미흡		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신설 ⇒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“뒷광고” 문제 등 사전 방지
자사 채널 동영상 광고의 협회 심사 대상 제외		신규 상장 ETF, 고위험 금융투자상품, 광고위원회 선정 상품 등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 ⇒ 회사별 광고심사 편차 해소 및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
사후점검 절차 미흡		게시된 광고물과 최종 심사안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사후 점검 의무 부과 ⇒ 정정 요구사항 미반영 및 심사필 내용의 임의 수정·누락 방지